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96 발의연월일: 2021. 10. 7.

발 의 자:윤영덕・이병훈・이형석

송갑석 · 문진석 · 조오섭

윤미향 · 권인숙 · 박홍근

민형배 · 김민철 · 양향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 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함)을 실시함.

교육시설 공제사업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적피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인적피해에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 당사자 와 가까운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사례가 많은 바,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 한 상담 및 치료비의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공제사업의"를 "공제사업 등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 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교육시설 <u>공제사업의</u> 실	제34조(교육시설 <u>공제사업 등의</u>
시) ① (생 략)	실시)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
	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
	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
	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u>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